

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

제정 2021. 9. 29. 조례 제3344호
일부개정 2022. 6. 27. 조례 제3420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근로기준법」, 「근로복지기본법」 및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양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여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 6. 27.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노동자”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
2. “사용자”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.
3. “취약계층”이란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,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차별 해소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적용한다.

1. 안양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
2. 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
3.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용자 및 시에 거주하는 사용자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①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노동인권정책 수립 및 시행

제6조(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)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를 포함하여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노동인권정책 기본방향
2.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
3.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
4. 노동 관련 조사·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
5. 그 밖에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·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.

제7조(연도별 시행계획)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점검 및 평가)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·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9조(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개발 및 지원) ① 시장은 노동자 권리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제, 정보제공 등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노동인권 교육) ① 시장은 시민과 노동자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취약계층 노동자 등의 노동권의 보호) ① 시장은 청소년, 여성, 노인 및 외국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(이하 “취약계층노동자등”이라 한다)의 노동권의 보호 및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취약계층노동자등의 인권 보호 및 상담, 건강관리 등에 대한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12조(일과 삶의 균형) 시장은 노동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<개정 2022. 6. 27.>

1.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
2.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홍보 및 지원
3. 육아 휴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지원
4.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과 피해 노동자 지원

제13조(산업안전 및 보건) 시장은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실태 파악
2.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, 홍보
3.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제3장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

제14조(노동인권센터의 설치 및 사업) ① 시장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추진을 위해 안양시 노동인권센터(이하 “노동인권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노동인권센터는 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.

③ 노동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22. 6. 27.>

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

1. 노동인권 정책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
2.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및 구제사업
3.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연구
4.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
5. 노동존중 인식확산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
6. 취약계층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사업
7. 노동 안전·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과 구제에 관한 지원사업
8.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사업개발
9. 노동권의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
10. 그 밖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

[제목개정 2022. 6. 27.]

제15조(노동인권센터의 조직 및 운영) ① 노동인권센터는 센터장, 사무국장 및 노동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. <개정 2022. 6. 27.>

② 노동인권센터는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한다. <신설 2022. 6. 27.>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인권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적절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6. 27.>

④ 노동현안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요구하므로 지방정부와의 연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리는 지방공무원을 파견하여 배치할 수 있다. <신설 2022. 6. 27.>

1. 사무국장
2. 노동정책 및 입안담당
3. 노동환경 개선담당
4. 정보화 담당
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

[제목개정 2022. 6. 27.]

제16조(정관) 노동인권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임직원에 관한 사항
5. 이사회에 관한 사항
6.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
7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9. 해산에 관한 사항
10. 공고에 관한 사항
11. 이사장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
12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[본조신설 2022. 6. 27.]

제17조(센터장의 임명방법 및 임기) ① 센터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2. 6. 27.]

제18조(직원임용 및 자격요건) ① 노동인권센터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용한다.

② 노동인권센터 직원의 자격요건은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2. 6. 27.]

제19조(노동인권센터의 지원) 시장은 노동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2. 6. 27.]

제20조(노동인권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) ① 노동인권센터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노동인권센터는 제19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노동인권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(정산서)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노동인권센터는 수입·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2. 6. 27.]

제21조(지도·감독 등) ① 시장은 노동인권센터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·감독한다.

② 노동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3. 임직원의 채용, 면직 및 직원의 승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임금, 성과급,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재산의 취득·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

[본조신설 2022. 6. 27.]

제22조(검사·보고) ① 시장은 노동인권센터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② 노동인권센터는 제1항에 따른 검사·보고 등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2. 6. 27.]

제4장 안양시 노동인권위원회 <개정 2022. 6. 27.>

제23조(노동인권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노동인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·자문
2.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·자문
3.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·평가
4. 노동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
- 5. 노동인권에 영향을 주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
- 6. 그 밖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

[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2. 6. 27.]

제2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,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- 1. 업무담당 국장
- 2. 안양시 노동인권센터장
- 3. 안양시의회 의원
- 4.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
- 5. 노동분야 정부기관, 시민사회단체, 사용자 단체, 노동단체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
- 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.

[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2. 6. 27.]

제25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을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[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2. 6. 27.]

제2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[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2. 6. 27.]

제27조(위원의 해촉)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시의원,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
2. 위원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
4.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5.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되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시장은 결원된 위원을 신규로 위촉할 수 있다.

[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2. 6. 27.]

제28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[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2. 6. 27.]

제29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

수 있다.

[총전 제22조에서 이동 2022. 6. 27.]

제30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, 이해관계인,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[총전 제23조에서 이동 2022. 6. 27.]

제31조(수당 등)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[총전 제24조에서 이동 2022. 6. 27.]

제3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총전 제25조에서 이동 2022. 6. 27.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 6. 27. 조례 제342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